[별표 8]

고정식포말소화장치에 사용하는 포말원액(내알콜)의 요건(제79조제9호나목 관련) <개정 2018.12.31>

1. 비중은 섭씨 20도에서 1.14 이상 1.20 이하일 것

2. 동점도가 섭씨 20도에서 60센티스토크스 이하일 것

3. 수소이온농도(PH)는 섭씨 20도에서 6.0 이상 7.5 이하일 것

4. 침전물은 0.1퍼센트 이하이고 또한 해수 또는 청수와 혼합하여도 그 이상 발생되지 아니할 것

5. 섭씨 65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보존되어 있어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상에 변화가 없을 것

6. 해수 또는 청수에 6퍼센트포말원액은 6에서 7퍼센트까지, 3퍼센트포말원액은 3에서 4퍼센트까지의 농도로 포말원액을 혼합발포시키는 경우 방수량의 6배 이상 12배 이하의 포말을 발생하는 것일 것

7. 다음 각 목의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
   가. 570리터의 메타놀을 넣은 용기(크기는 길이, 너비 및 깊이가 각각 3.05미터, 3.05미터 및 0.61미터로 한다)에 점화하여 메타놀을 연소시켜 1분이 경과한 후, 포말원액에서 얻어진 포말(31.9ℓ/min의 방수량을 가지는 표준포말노즐을 사용하여 발생시키는 것)을 그 용기 상방의 화염을 넘어 용기 뒷부분의 직립철판까지 방사시켜 흘러내리게 하여 연소표면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경우 그 포말의 효과가 연소표면을 덮어 씌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분 안에, 화재를 제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안에, 완전 소화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안일 것
   나. 가목에 따른 시험에 있어서 포말을 5분간 방사한 후 별도의 불꽃을 포말 표면에 접근하여도 인화 및 재발화하지 아니할 것
   다. 가목에 따른 시험에 있어서 포말방사 종료 후 15분이 경과한 후 포말의 층을 용기의 중앙에서 150밀리미터×150밀리미터의 각형으로 절취하고 유면을 노출시킨 후 그 유면을 5분 동안 연소시키는 경우 그 노출면이 610밀리미터×610밀리미터 이상으로 확대되지 아니할 것